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33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고민정 · 강경숙 · 김영호
민형배 · 정을호 · 서미화
김 윤 · 김준혁 · 손 솔
이성윤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

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을 “인종·국적·민족·장애·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항제3호의 판단기준”으로 한다.

3.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이 제5조제2항제5호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 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u> <u>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u> <u>있는 것</u>	5. <u>인종 · 국적 · 민족 · 장애 · 성</u> <u>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u>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 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 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 · 도(특별자 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 · 군 · 자치구에 각각 옥외광 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u>

	을 포함한다)이 제5조제2항제5호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항제3호의 판단기준----- -----.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⑥ (생략) <u><신설></u>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 ----- ----- ----- ----- ----- ----- ----- ----- -----제9항 및 제10항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	

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⑩ (생략)

⑪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신설>

-----.

⑨ -----제8항-----

-----.
-----.

⑩ -----제9항-----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제11항-----

-----.

제20조(과태료) ①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

<u>1의3.</u> (생략) 2. ~ 5. (생략) ② · ③ (생략)	<u>시한자</u> <u>1의4.</u>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